

[기자회견문] 거짓과 증오의 상징물 소녀상 전시를 중단하라!

지난 1991년 8월 14일, 한국에서는 ‘김학순’이라는 여성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자처하고 나선 이후로, 위안부 문제는 줄곧 ‘일본군이 조선의 어린 소녀들을 강제로 끌고 가 성폭행을 일삼고 성노예 생활을 강요하고 심지어 살해하기도 했다’라는 정의기억연대(정대협 후신)의 주장이 마치 정설인양 굳어졌습니다.

더구나, 2011년 12월 14일에는 정의기억연대가 수요시위 1,000회를 기념하여 주한일본대사관 건너편 인도에 소위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제 위안부 소녀상은 국내에 150개, 해외에 30개가 넘게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형태의 소녀상이 ‘표현의 자유’를 빙자하여 일본 각처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단일 동상을 이렇게 많이 세우고 전시까지 하는 경우는 세계사에서 북한의 김일성·김정일의 동상에서나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기괴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위안부 소녀상은 조각가의 그릇된 역사 인식이 투영된 거짓과 증오의 상징물이자 위안부사기극의 선전도구일 뿐입니다. 조각가는 ‘빈 의자에 새긴 약속’이라는 작가 노트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의 꽃다운 나이의 소녀들과 젊은 여인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전쟁터로 끌고 가 성노예로 삼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무참한 범죄를 서슴없이 저질렀다.”고 하여 위안부가 곧 전쟁범죄의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1998년 케이 맥두걸 UN 인권위 보고서에서는 전쟁범죄에 대하여 “강간을 포함한 성폭력 행위가 국제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적군이나 점령군에 의해 자행되었을 때”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제분쟁이나 무력충돌 지역에서 적대국의 여성을 납치·강간·살해하는 등의 행위가 바로 전쟁범죄입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은 일본의 점령지가 아닌데다 조선 여인은 일본 국민 신분이었습니다. 또, 위안소는 점령지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 방지를 위하여 설치·운영된 합법적 매춘 공간이었으며, 위안부는 위안소 주인과 계약을 맺고 영업허가를 얻어 돈을 번 직업여성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상대했던 고객 대부분이 일본군인들이었기 때문에 일본식 예명을 각자의 방문 앞에 걸어두고 영업을 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전쟁범죄 피해자가 아니었음은 쉽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작가는 일본군의 꼬임에 넘어가거나 강제로 전쟁터에 끌려간 10대 초중반의 어린 여성을 작품으로 표현하기 위해 11살짜리 자신의 딸을 모델로 13세~15세 소녀의 모습으로 소녀상을 제작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출국 전에 포주와 계약을 맺은 다음 관할경찰서에 직접 출두하여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으며, 현지에 도착해서도 현지 영사관 경찰서에 친권자승낙서, 호적등본, 인감증명서, 영업허가원서, 영업인조사서와 함께 사진 2 장을 제출하고 영업허가를 얻어야만 위안부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호적등본은 친권자 외에도 위안부의 실제 나이를 확인할 수 있어 이를 속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문제는 당시 일본군 위안부는 법률상 17 세 이상이어야만 가능했기 때문에 13~15 세 소녀는 애초에 일본군 위안부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국내외의 수많은 소녀상은 위안부에 대한 왜곡·날조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작·설치되었습니다. 이번에 ‘표현의 부자유전’에 전시된 소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마땅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짓을 바탕으로 한 표현까지 존중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소녀상은 겉으로는 평화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평화가 아닌 대립과 갈등만 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이를 수 있는 평화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희는 소녀상 제작자인 김운성·김서경에게 엄중하게 촉구합니다.

‘표현의 부자유전’에 출품된 소녀상의 전시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2022. 8. 27.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